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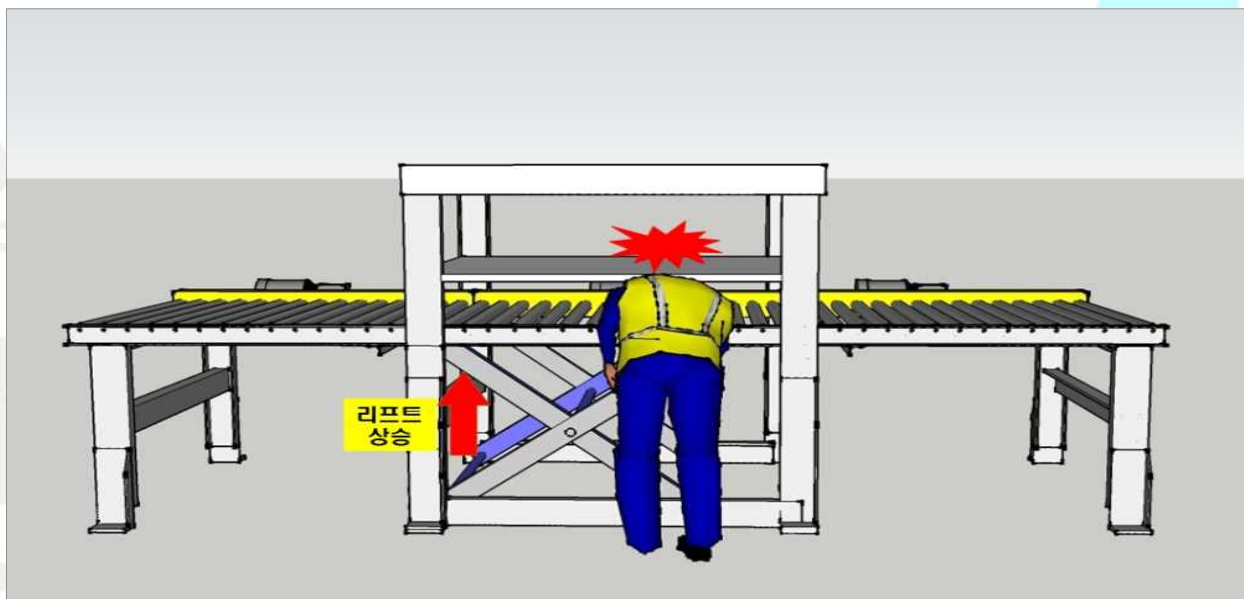
중대재해 사례 속보(리프트 끼임)

본 속보는 경기서부지사 관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 사업장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. 금번 발생한 사고는 원인규명이 완료되지 않은 재해조사 진행 중인 사안으로 사법적 사항 등과는 무관하며, 사례전파 및 동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신속히 배부하오니 안전 교육 등에 참조하여 동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유압리프트와 유압리프트 상부를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

< 사고개요 >

2020년 07월 27일(월) 09시 19분경 경기도 소재 ○○ 사업장내 ○○ 공정 라인에서 작업 도중 유압으로 상승하는 리프트와 상부 틀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한 재해임.



재해발생상황도(추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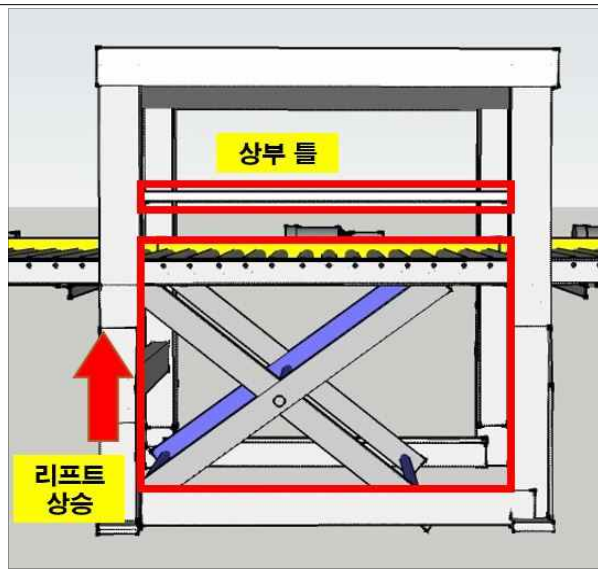
1 재해발생과정

- 재해발생 당시 컨베이어의 PLC(Programmable Logic Controller) 로직에 이상이 생겨 경광등에 이상신호가 확인 되었고, 근처 동료작업자가 사고현장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유압리프트와 상부 틀 사이에 재해자 머리가 끼어있는 상태로 발견 됨

※PLC : 프로그래밍 가능한 논리제어기

중대재해 사례 속보(리프트 끼임)

<기인물 : 유압리프트>



- 유압리프트 스트로크: 510mm
- 리프트 상승 후 상부 틀과 의 간격: 110mm
- 유압리프트 상부 틀 규격
- 800mm(가로) x 40mm(세로) x 80mm(두께)
- 최대 상승가능 중량: 500kg

2 재해발생원인(추정)

- 유압리프트의 상하작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곳에 근로자 신체일부 접근
 - 유압리프트의 상하작동으로 인하여 상승점 끝에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끼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나, 이러한 조치가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, 설비의 위험부위에 머리를 넣어 자동운전 중인 상태로 상승하는 유압리프트와 유압리프트 상부 틀에 끼이게 됨

3 동종사고 예방대책

- 유압리프트의 상하작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곳에 덮개 또는 울 설치
 - 유압리프트의 상하작동으로 인하여 상승점 끝에 근로자의 신체일부가 끼일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나 울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신체일부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광센서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 위험부위에 신체일부가 접촉하였을 경우 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 실시
- 상승하는 유압리프트에 센서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신체일부 등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거나 하강하도록 안전하게 기계기구 설계
- 상승 압력을 근로자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을 정도의 압력으로 제한하여 설치